

---

# 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 규약

---

## 제1조 【근거 및 목표】

- ① 본 규약은 정관 제8조 의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조합의 비전, 핵심가치, 사명은 다음과 같다.
  - 가. 비전: 지역에 공헌하며 지속가능한 교육문화공동체
  - 나. 핵심가치: 취약지역교육봉사, 지속가능, 소통과 협력, 창의인재육성
  - 다. 사명: 농산어촌과 도심 취약지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봉사 정신이 투철한 울산지역 청년 일자리 제공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속 운영 공교육과 연계 교육성과 제고

## 제2조 【조합원의 가입 및 조건】

- ①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가입 자격은 예비조합원과 정규조합원으로 구분하며, 예비조합원은 1년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조합원으로서의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예비조합원은 출자금 및 의결권, 선거권이 없다.
  - 자원봉사자·후원자 조합원의 경우 이사 4인 이상 추천으로 승인되며, 이사회는 생략한다.
- ② 조합원 가입 제출서류는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조합원인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 강사조합원은 이력서 및 관련자격증사본 등을 기본서류로 제출한다.
- ③ 조합원 가입조건은 「방과후교육문화」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자로서 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며, 지역사회공동체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 제3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①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있는 조합원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용어 및 업무유형을 정리한다.
  1. 생산자조합원은 방과후학교강사, 돌봄전담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지칭한다.
    - 1-1. 방과후학교 강사와 돌봄전담사들 중 4대보험 가입자들은 생산자조합원으로서, 위탁운영 학교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외부적인 요인 (국가정책방향 전환, 위탁사업 입찰 탈락,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에 의해 사업이 지속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 발생시 근로계약은 중단되며, 생산자 조합원으로서 활동만 가능하다.
  2. 소비자조합원은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들로서 조합내의 운영되는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기타사업을 제공받고 협력하는 조합원을 지칭한다.

3. 직원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 기획관리운영본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본부 및 지사 운영관리, 회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4. 자원봉사자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식기부 등을 하는 자를 말하며, 후원자조합원은 조합의 필요한 현물 및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생산자조합원의 경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관련 교육과정 (Teach For Ulsan 자체 교육과정 포함)을 이수한 자로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전담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상실된 자는 10일 이내에 기획관리운영본부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조합원 책임 및 제명】

- ① 정관 12·14조에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조합의 권익보호 및 사업활동에 성실히 임하며, 조합원 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회결의를 통해 정기총회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 ② 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아래와 같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
  1. 조합원은 조합내 사업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2. 출자금을 가입 승인 후 매년 10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2년이상 연속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시킬 수 있다.
  3. 생산자조합원은 방과후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자는 학교,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에 책임 있게 임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명요구를 할 수 있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 이사회 심의 후 제명요구를 할 수 있다.
  6. 조합원은 조합에서 주최하는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7. 생산자조합원은 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중심으로 고과를 평가하여, 강의배정시 참고할 수 있다.

#### 제6조 【조합원의 혜택】

1. 조합원 자녀 대상 조합 위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2과목이상 수강시 분기별 1만원 지원
2. 조합원 자녀 대상 조합에서 주관하는 체험캠프 참여시 참가비 감면
3. 문화 복지 혜택
  - 조합원 생일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 지원
4. 조합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과정 참여시 수강료 감면
5. 조합에서 주관하는 전문직무교육 수강료 감면

6. 방과후학교 관련 위원회 소속 증빙시 소정의 활동비 지원
  - 연 10만원 기준 활동비 지원
7. 조합원 간 교류모임 장소 및 다과 지원
8. 협동조합 창업 희망시 창업지원 기관 연계 및 컨설팅 제공

#### 제7조 【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

정관 15, 16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제8조 【출자금】

- ① 출자금은 정관 제17,18, 19조 규정에 의하여 1좌(10,000원)이상으로 신규가입자는 가입승인 후 10일 이내 법인통장으로 납입해야한다.
- ② 조합원은 출자금 1좌(10,000원)이상으로 정규조합원의 경우에는 매년 10좌이상 (100,000원)를 법인통장에 납입한다.
- ③ 대의원 및 임원으로 임명되는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증자를 해야 하며, 증자금액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임명 후 10일 이내 증자금액에 대해 법인통장에 납입한다.
- ④ 전항의 출자금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임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조합은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미수금, 기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자의 출자금과 상계로서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⑥ 출자금의 사용은 Teach For Ulsan 전체사업운영에 사용되며, 기획관리운영본부에서 담당한다.

####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 ① 정관21조에 의하여 조합활동 사용료 및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조합의 사업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합활동 협력금(약칭: 협력금)’이라 명칭을 통일한다.
  2. 각 사업에 대한 협력금은 기획관리운영본부에서 조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협력금은 사업운영비 및 조합원 복지, 연구, 교육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며 협력금 조정 및 기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② 주사업(국가위탁사업)인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전담사에 대한 협력금은 입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단, 돌봄교실사업의 위탁운영비 지원시 협력금은 제외한다.
- ③ 조합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협력금 비율은 기획관리운영본부에서 조정하며, 이사회에 의결한다.

#### 제10조 【총회】

- ① 정관23~32조에 의하여 진행하며, 별도사항에 대해 총회 및 선거규약으로 정한다.

#### 제11조 【이사회】

- ① 정관 39~41조에 의하여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 및 규약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상임이사, 이사 등 세부역할을 분담한다.
- ③ 이사회는 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결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 ① 정관44조에 의하여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선출 자격기준은 조합원 중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이며, 선거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2/3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받아 선출한다.
- ③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이사출자금에 맞추어 증좌하여야 하며, 증좌금액을 10일 이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임원직이 상실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 ① 정관 49조에 의거하여 이사장, 상임이사에게 보수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사들의 보수는 각 사업 업무역할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타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 【대의원의 역할과 책무】**

- ① 정관 24~26조에 의거하여 대의원을 두며, 소비자, 생산자(직원,강사), 자원봉사자, 후원자조합원에 따라 구분한다.
- ② 대의원의 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역량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차등 결정한다.
- ③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대의원은 일반조합원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 2. 대의원 중 조합 공헌에 따라 이사로 선출자격이 부여 된다.
  - 3. 대의원은 규약 제8조 3항 따라 출자금을 증좌 해야 한다.
  - 4. 조합 내 사업 및 조합원관리 성과에 따라 기획운영관리본부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강사조합 대의원은 강사조합원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협력한다.

**제15조 【직원 임면 등】**

- ① 정관 54조에 의거 직원은 기획운영관리본부 운영에 필요한자로 이사장이 직접 임면 및 관리하며, 직원의 수와 급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상임이사 및 본부장 등 간부직 직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직원의 지위와 역할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한다.
  - 1.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기획운영관리본부를 총괄관리 운영한다.
  - 2. 본부장은 교육, 홍보, 재무, 연구개발 등 각부서의 책임자로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 3. 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각부서의 실무를 책임진다.
  - 4. 팀원은 팀장을 보좌하여 업무실무를 맡는다.
- ④ 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상분은 기획운영관리본부에서 조정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⑤ 직원은 직원조합원으로 가입해야하며, 정관, 규약에 정하는 책무를 이행한다.
- ⑥ 직원조합원 근무평가서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 제16조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

- ①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약간인의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이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 2. 자문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② 정관 제 4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해촉한다.
- ③ 명예이사 및 자문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사업단의 설치】

- ① 정관 59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주사업 외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별도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
- ② 사업단의 특별회계는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18조 【규약제정 및 의결】

- ① 규약제정은 정관에 의거하여 제정하며, 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규약제정에 대한 논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획운영관리본부에서 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 ③ Teach For Ulsan 사회적협동조합 규약 외에 지침, 분야별규정집과 메뉴얼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약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약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약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